

'86年度 食品衛生 施策方向

최근 우리나라 국민 식생활 양상이 외식과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게 되고 식품의 종류도 다양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과 식품영양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식품의 제조 판매 및接客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식품接客업소 및 제조가공업소는 타 산업체에 비하여 시설이나 자본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무허가, 변태영업등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85년도 하반기에는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및 법무부와 4부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바 있다. '86년도에도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앙 및 시·도에 상설 기동감시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므로써 '86아시아 게임 및 '88올림픽을 대비한接客업소의 위생 및 서어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업무종사자의 교육, 대국민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등 우리나라의 식품위생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그 주요 시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조리, 유통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86상반기 중에 관계법령, 제도를 보완·정비할 것이다.

① 단속의 실효를 거두고 불법영업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신체적으로나 재산상으로 무거운 벌칙을 적용하므로써 무허가, 변태,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조리, 유통을 막도록 벌칙이나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② 무허가 영업자, 허가취소자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당해 영업소의 시설철거, 봉인등 직접 강제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허가 대상품목을 무허가로 제조한 경우 이들 식품의 판매 유통을 금지시킴과 동시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치하고

④ '86년도 상반기중에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불량식품의 제조, 조리, 판매의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영업의 시설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⑤ '85.2.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식품별 유통기한을 설정하여 표시하도록 법제화하였으나 '86.3.1.부터 '86. 8.17까지는 시험표시 기간을 정하여 지도, 계몽하고

동년 8월 18일부터는 대상식품에 대한 표시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2. 집중적인 지도·단속강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조리, 유통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령, 제도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기 또는 수시 입점이나 제품의 수거검사의에 '86년도부터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가공, 유통을 완전 차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감시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1) 상설기동감시반 편성 운용

현재의 행정기관 감시인력 및 조직으로서는 급증하는 식품업소와 대량 유통되는 식품의 감시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임으로 '86년도부터 중앙, 각 시, 도에 상설기동감시반을 편성 운영할 방침으로 이미 소요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 편성(전국 5인조 16개반, 80명)
 - 중앙 : 1개반
 - 지방 : 15개반(서울, 경기 2개반, 기타 시·도 1개반)
- 운영방침
 - 단속본부(보건사회부 위생감시과)의 총괄적인 활동계획 수립지휘
 - 취약지역, 취약업소, 취약부문에 대한 기동투입
 - 일선감시활동과의 체계적 운영
- 기동장비 : 9인승 합승 16대, 오토바이 80대 등

(2) 지속적인 관계부처 합동단속 실시

'85년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4개부처(경제기획원·내무부·법무부·보건사회부) 합동단속을 '86년도에도 계속하여 실시하되 종전의 5대 기본식품(식용유, 절임식품, 어육연제품, 두부, 장류식품) 외에 다소비 유통식품등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이 우려되는 식품을 추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 및 위반자는 법정 최고벌칙 또는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3.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제정·개정등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 및 기준을 제정·개정하는 등 식품에 관한 제반기준을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이다.

① 농산물의 잔류농약 최대허용 기준 및 해산어류의 중금속 최대허용 기준을 설정하여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85년도에 이어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20개 농산물에 대한 BHC등 19종의 잔류성 농약 및 수산물에 대한 비소등 6개 중금속의 최대허용 기준을 설정, 이에 적합한 원료만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그 대상과 폭을 점차 확대해 나아갈 것이며,

② 식품오염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수은등 8개 유해물질에 대한 오염실태나 섭취실태를 파악하여 추이를 예견하고 필요시 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③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식품첨가물로 인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현재 각 첨가물의 규격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기준을 외국의 기준등과 비교 검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④ 업종별 제조품목 허가에 있어서 취약성이 있는 업종부터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허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고 이를 각 시, 도 및 제조자에게 배부하여 행정기관의 허가관리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식품제조업소에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제도화한다.

4. 업주 및 종사자의 자질향상 도모

현행법령 제도상 식품영업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연 1회(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회수, 시간, 교육내용이 교육대상자의 위생 및 서어비스등 자질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에는 미약하므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교육제도를 강화하고 '86년도에는 행정기관 및 업종단체를 통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집중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교육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① 식품영업을 하고자 하는자 및 식품위생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영업 및 직무개시전에 소정의 교육이수제도 도입 ②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제도 도입

5. 주문식단체의 완전정착 유도

비위생적이고 낭비적인 우리의 식생활 방식을 개선하고자 '83년도부터 추진해 온 주문식단체는 그간 음식점 영업자의 협조, 국민의식수준 향상 및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 계몽으로 그 실시업소가 날로 증가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 측면으로 볼 때에도 주문식단체 실시업소 이용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완전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86아시안 게임 개최 전까지는 주문식단체의 완전정착을 위해 업소별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 담당업소의 주문식단체를 책임지고 정착시키도록 유도할 것이며,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반찬을 포함한 모든 음식의 개인별 제공을 이행토록 다자적이고 지속적인 대민홍보 및 계몽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6. 접객업소의 위생시설 개선추진

'82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주방등의 위생시설개선사업은 그간 해당업주의 협조와 일선 행정기관의 부단한 노력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86년도에도 화장실, 주방개수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85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주

방공개사업을 '86년도에는 군지역 이상업소(군지역 : 100m²이상, 시지역 : 33m²)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업소의 주방공개 사업추진을 적극 유도할 것이다.

7.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는 타산업체에 비하여 자본, 시설규모등이 영세하며 특히 접객업소의 경우 업소면적이 33m² 이하인 업소가 전체의 56% 이상이고, 종업원수 5인미만 업소가 88% 이상이며,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가 8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시설개선 종사자의 서어비스개선등 위생 및 서어비스 수준향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부에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시 영업정지 이하의 행정처분 사항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 징수된 과징금을 주채원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조성, 동 기금을 식품업소의 시설개·보수 소요용자자금으로 활용하고 식품에 관한 교육, 연구조사, 홍보사업등 식품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8. 업종단체 기능의 활성화 유도

현행 식품영업에 있어서 업종단체 또는 동업자 조합은 회원 회비에 의해 회원업소 친목유지에 관한 사항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이들 업종단체로 하여금 회원업소 지도, 교육, 홍보, 조사, 연구검사업무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며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는 소요 자금등을 정부가 지원하므로서 급증하는 식품위생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업종단체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여 행정기관, 단체, 업체와 유기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